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규정

[시행 2024.11.15]  
( 제정) 2024.11.15 훈령 제410호

관리책임부서명 : 해양사업과(해양사업개발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688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자”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권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발생을 예방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을 보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제2장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매뉴얼의 작성 및 재해발생 시 조치

**제5조(관리운영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재해발생 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효과적인 재해예방 또는 재해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계류선박 및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조치 등 관련사항을 협의·결정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 기상상황이 마리나항만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유관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사용자 및 방문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을 통제하고 대피시켜야 한다. 발령 중인 경보는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해야 한다.

## 제3장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

**제7조(안전사고 예방)** ① 관리운영권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마리나항만시설 내 사용자등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자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1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사용자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인명사고 예방 및 대응)** ①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매년 적십자, 학교, 소방서, 해양경찰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응급구급함은 관리사무실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③ 사용자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의식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 실시
2.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 또는 구조기관에 신고
3. 관리운영권자에게 보고

**제9조(안전점검)**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의2 및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장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제10조(해양시설의 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해양시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2. 시설의 부식, 마모,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완
3. 시설의 개·보수 또는 시설변경을 위한 계획의 수립
4. 계류시설, 주유시설, 저장시설, 배관의 이상 유무에 대한 별표 2의 점검기록부 작성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해양오염 방지)** ① 관리운영권자는 선박주유소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보고 절차 등을 명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 매뉴얼에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②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은 주유 또는 급유 시 사전에 선박의 접안 및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기름의 유출 및 화재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방재용품과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선박 주유 또는 급유 전 마리나항만시설 근무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양오염 신고의무 및 방제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선박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 되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 ① 사용자들은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쓰레기 및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직접 처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들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4조(환경정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주변의 부유물·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의 부유물·폐기물 등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들에게 있는 경우 투기금지 및 수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5조(운영시간)**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영리행위의 금지)** ① 사용자들은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수상레저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들이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선박의 계류)**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하려는 선박은 제23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선석에 계류해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류 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선박에 부착된 덩기나 고무보트 등을 해당 선박 내에 보관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 선박의 계류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 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선박의 주유·급유 및 수리 등)** ① 선박의 급유, 세척, 수리, 오수·폐수 및 폐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선박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신축·증축, 개수·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연간 단위로 마리나항만시설 내 시설물의 관리·보수 비용을 미리 산출하여 비용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 파손 등의 신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 또는 변형시키거나, 파손 또는 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 또는 변형된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 또는 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파손된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한다.
2. 노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가 보수·보강 조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 및 수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처리 또는 조치하고, 관리운영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제22조(사용승인 대상)**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 보트, 세일링요트등에 한정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1. 등록을 준비 중인 미등록 선박
2. 매매를 위해 임시 보관 중인 선박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개인 또는 법인이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유자와 신청자가 같음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척으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승인해주는 계류선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선박이 저당권 설정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승인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중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류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등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계류시설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계류시설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 신분증
2. 사용자 도장이 날인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3. 관리대행자 신분증

### 4. 사용자와 관리대행자의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24조(사용기간 및 연장)** ①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5조(사용승인 변경신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승인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 가능한 사용자 소유 또는 공동 명의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선박으로 변경 후 3개월 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사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선석을 반환 신청하고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④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과 같이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규정의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취소에 불복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승인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 취소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 시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징수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의 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③ 조례 별표 2 제2호의 그 밖의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경우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사용 요금에만 적용하고 일시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계류시설 사용료 1년을 선납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100분의 10

3. 레저선박을 창원시에 등록한 경우: 100분의 5

4. 임시운영기간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그 증명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수상계류 계약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의 이유로 육상계류 시 일정 기간 육상계류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육상계류비를 감면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 받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류가 가능한 날까지의 해당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7장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안**

**제30조(출입검사 및 출입관리)** ①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 선박의 출입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 국적의 선박은 선박 출입국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시설 출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 **부 칙 <훈령 제410호, 2024. 11.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